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나526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나5265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1가단26544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유재민, 이환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고영구

변론 종결2024. 8. 29.

판결 선고2024. 10. 10.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1가단26544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224,652,5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24,652,5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9쪽 제15행부터 제11쪽 제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C의 소극재산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10,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G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은 다음 <표2>기재와 같이 2,533,872,606원이다.'

<표2>

1	G 주식회사	85,509,587	K 주식회사 채무 연대보증	2018. 3. 30. 대출
2	주식회사 F	235,919,690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금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0,000,000	K 주식회사 채무 연대보증	2017. 9. 12. 대출
100,000,000	이 사건 법인 채무 연대보증	2016. 11. 10. 대출		
4	H 주식회사	24,000	카드대금	
5	주식회사 I1) C의 2017. 4. 14.자 대출 30,000,000원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서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0. 12. 당시 예금 잔액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극재산에서 제외한다.	224,991,000	K 주식회사 채무 연대보증	2017. 12. 15. 대출 을 제16호증 잔액 반영
300,000,000	K 주식회사 채무 연대보증	2014. 5. 26. 대출		
92,460,000	K 주식회사 채무 연대보증	2013. 4. 5. 대출 보증한도 내		
100,000,000	K 주식회사 채무 연대보증	2013. 4. 5. 대출		
98,304,000	K 주식회사 채무 연대보증	2018. 4. 27. 대출		
272,040,000	K 주식회사 채무 연대보증	2017. 8. 8. 대출 USD240,000 2018. 10. 12. 환율 1,133.50원 적용		
6	주식회사 J2) C의 주채무 20,000,000원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서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0. 12. 당시 예금 잔액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극재산에서 제외한다.	190,000,000	보증채무	

1	G 주식회사	85,509,587	K 주식회사 채무 연대보증	2018. 3. 30. 대출
7	중소기업은행	14,040,000	이 사건 법인 채무 연대보증	2016. 4. 22. 대출 2018. 8. 28. 보증
31,600,000	이 사건 법인 채무 연대보증	2016. 7. 25. 대출 2018. 8. 28. 보증		
45,540,000	이 사건 법인 채무 연대보증	2018. 6. 21. 대출 2018. 8. 28. 보증		
8	원고3) 이 사건 한도대출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서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0. 12. 당시 예금 잔액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극재산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보증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권도 C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74,000,000	K 주식회사 채무 연대보증	2017. 11. 27. 대출 2018. 11. 26. L으로 변경
262,000,000	K 주식회사 채무 연대보증	2018. 6. 25. 대출 2018. 12. 24. L으로 변경		
157,444,329	이 사건 보증채권	2018. 10. 26. 보증		
합계	2,533,872,606			

○ 제1심판결 제11쪽 제16행과 제12쪽 제1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가 이 사건에 원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 관한 사안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하였으나 장래에 소멸한 K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소극재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4행 중 '2,376,428,277원'을 '2,533,872,606원'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은 2018. 3. 8.부터 2018. 10. 12.까지 피고 및 가족들로부터 309,000,000원을 차용하여 본인이 투자하여 경영에 관여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과 K에 310,000,000원을 지원하였고, 담보 제공의 실질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C은 이 사건 법인과 K의 존속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 대여금을 담보하고 추가 금전 대여를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몰랐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가 있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 명의 은행계좌로 피고의 자매인 V가 2018. 3. 8. 100,000,000원, 피고의 자매인 W이 2018. 4. 30. 100,000,000원, 2018. 12. 17. 50,000,000원, C의 사위 X이 2018. 5. 16. 20,000,000원, 피고가 2018. 4. 30.부터 2019. 6. 18.까지 249,00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 C이 K 명의 은행계좌로 2018. 3. 9. 100,000,000원,

2019. 7. 1. 30,000,000원, 이 사건 법인 명의 은행계좌로 2018. 5. 3. 70,000,000원, 2018. 5. 18. 100,000,000원, 2018. 10. 4. 20,000,000원, 2018. 10. 12. 20,000,000원, 2018. 11. 1. 40,000,000원, 2018. 12. 17. 45,500,000원, 2019. 4. 30. 30,00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기로 한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C과 피고, V, W, X 사이에 대여금 약정이 있었다거나 C과 피고 사이에 담보제공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기록상 제출된 바 없다.

② 등기부상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은 2018. 10. 12.자 증여이고,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에 대하여 실효적인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④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뿐 아니라 V, W, X으로부터도 돈을 차용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가액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이체된 179,000,000원보다 약 2배 많은 340,000,000원이며, 그 이후 피고로부터 이체된 돈을 합하여도 249,000,000원에 그친다.

⑤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피고에 대한 담보 제공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까지 피고로부터 이체된 179,000,000원 상당의 채무이행을 유예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후 피고로부터 이체된 70,000,000원이 이 사건 법인과 K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피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거나 새로운 수익창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다.

3)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전후로 C의 은행계좌로 249,000,000원을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명재권

판사이민수

판사송승용

별지

1) C의 2017. 4. 14.자 대출 30,000,000원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서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0. 12. 당시 예금 잔액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극재산에서 제외한다.

2) C의 주채무 20,000,000원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서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0. 12. 당시 예금 잔액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극재산에서 제외한다.

3) 이 사건 한도대출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서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0. 12. 당시 예금 잔액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극재산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보증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권도 C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